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 <개정 2026. 6. 23.>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		154,932
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50,467
시장·군수 및 자치구 의 구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31,604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21,337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12,531

비고

1.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50,467천원, 통합특별시·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21,337천원,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12,531천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의 연봉은 121,337천원으로 한다.
2.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21,337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12,531천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와 경기도남부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31,604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21,337천원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12,531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04,933천원으로 한다.
3.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법 제205조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봉은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